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2001. 6. 2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6월 7일

○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6. 15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가. 제안이유

○ 사무의 위임중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장에게 위임되어 왔으나

2000년도 정부합동 감사 시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 지적되어 위임한 인사권 중 일부를 환수하고,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여 인사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증평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소속 공무원 인사권중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권한위임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전보권 위임
- 충북과학대학장에게 부교수 이하의 임용권 위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고,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부서 내 전보권한을 종전 7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확대 위임하고, 충북과학대학장에게 6급 이하 학내 전보권과 부교수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판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무과란증 사무명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출장소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 과학대학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지방연구직·지도직의 호봉승급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농업기술 원장	"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충청북도 개발사업소장	"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신 구 조 문 대 조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무과	1	○ 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총무과	1	○ 출장소 소속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 행				개 정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총 무 과		<신설>			총 무 과	1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한내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총무과 대학강 교육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2항
	1	(생략)	자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현행과 같음)	자방공무원 교육원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 지방연구관· 지도과의 호봉승급	농업기술 원 장	"		3	○ 지방연구관· 지도과의 호봉승급 ○ 6급이하 지방 공무원(지도사·연구 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농업기술 원 장	"
	3	○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부(部)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4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4	○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	충청북도 개발사업 소장	"		5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	충청북도 개발사업 소장	"
	5	○ 7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및 자소간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6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6	○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신림환경 연구소장	"		7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	신림환경 연구소장	"
	7	○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및 자소간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8	○ 6급이하 지방 공무원 연구사(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 제55조 (공립대학의 장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의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②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전임강사·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립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립대학의 장이 보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